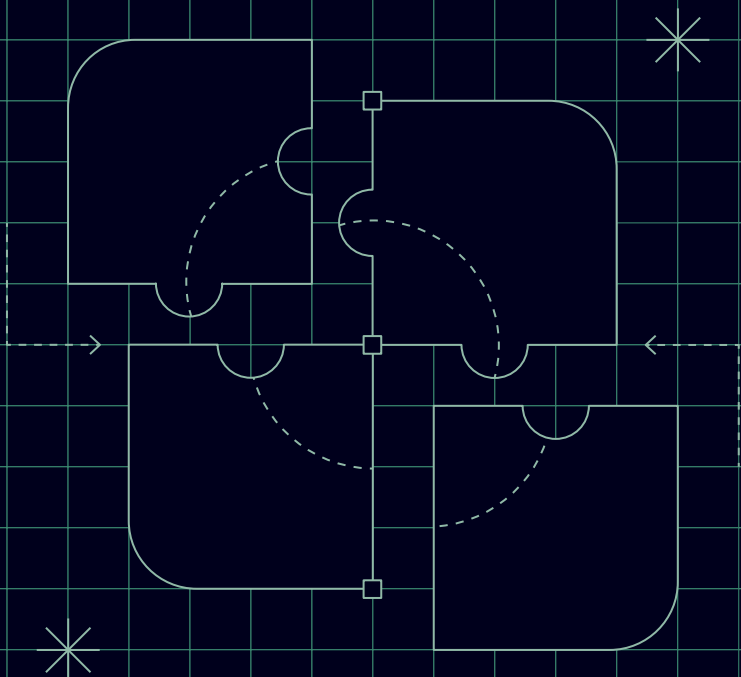


기아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엑기스
하도급법편



하도급법상 금지행위의 유형



부당한 특약 금지

(법 제3조의4)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법 제4조)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당하게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법 제8조)
협력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부당반품 금지

(법 제10조)
납품받은 후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반품

감액 금지

(법 제11조)
제조 등의 위탁 시 정한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2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로
하여금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함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2조의3)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법 제18조)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협력사의 경영에 간섭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19조)
협력사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

* 자율준수 가이드 113~123쪽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금지유형

손해의 3배 배상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①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법 제4조)
- ②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법 제8조 제1항)
- ③ 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0조)
- ④ 감액 금지 (법 제11조 제1, 2항)
- ⑤ 보복조치 금지 (법 제19조)

손해의 5배 배상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2조의3 제4항)

* 자율준수 가이드 125쪽

하도급 대금의 결정과 지급 시 주의사항



1.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법 제4조)

사업자는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2. 부당한 감액 금지

(법 제11조)

협력사에 위탁을 할 때 정한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3. 대금지급기일 준수

(법 제6조, 제13조)

사업자는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 지연이자 연 15.5% 지급
- 지급어음의 만기일이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어음할인료(7.5%) 지급
-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시 수령일의 60일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 지급

* 자율준수 가이드 115~116쪽, 121쪽

CHECKLIST

* 자율준수 가이드 131~135쪽

- ☒ 협력사의 견적가를 낮추어 대금을 결정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합의 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 ☒ 대금 감액 시 감액사유와 기준, 물량, 감액금액, 공제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자료, 연구자료·연구개발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

(법 제12조의3)

기술자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요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기술자료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구했다라도, 비밀유지계약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4. 기술자료 유용 금지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자율준수 가이드 117~120쪽

CHECKLIST

* 자율준수 가이드 132쪽

- ☒ 기술자료 요구서에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한다.
- ☒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 협력사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협력사의 사전 동의 및 협력사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이란?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승인을 받게 하거나 협력사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매출자료, 경영전략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그럼, 여기서 요구할 경우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경영상의 정보”는?

- ① 원가산출내역서 등 원가에 관한 정보
- ②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매출에 관한 정보
- ③ 제품개발·생산·판매·신규투자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 ④ 거래처 명부 등 영업 관련 정보 등

* 자율준수 가이드 123쪽

CHECKLIST

* 자율준수 가이드 133쪽

- ☒ 하도급거래량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 ☒ 협력사의 인사에 간섭하거나, 협력사의 재하도급을 제한하거나, 협력사의 사업장에 허락 없이 출입하지 않는다.
- ☒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경영상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지 않는다.

자율준수 가이드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준법경영 지원시스템



기아는 윤리·준법 경영 확산을 위해
준법경영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준수 가이드뿐 아니라 뉴스레터,
그 밖의 가이드라인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 ▶ Autoway 접속 ▶ 좌측 상단 버튼 클릭
- ▶ “업무 Tools” 중 “업무시스템” 클릭
- ▶ 업무시스템 페이지에서 “준법” 검색
- ▶ 준법경영지원시스템 접속

기아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를 소개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운영책임자로, CP 계획 수립과 운영(교육, 점검, 평가 등),
최고경영층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2024년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준법지원인인
이우상 준법지원팀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자율준수(CP) 전담부서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로,
준법지원팀입니다.

자율준수 전담부서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무 운영
 - √ CP 관리체계 운영
 - √ CP 문화 확산 및 교육
 - √ 사전감시제도 운영
 - √ CP 운영 효과성 평가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및 관련 부문 지원